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0.2.18>

제 호
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
상호(명칭) :
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) :
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소재지) :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람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합니다.
년 월 일
특별시장
광역시장 <input type="checkbox"/>
도지사

33331-00711일

210mm×297mm

96.10.4 승인

(보존용지(1종) 120g/m²)